

**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  
규정폐지규정(안)**

○ 폐지이유

지방자치법(법률 제4,464호 '91.12.31)과 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3,586호 '92. 2.15)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區議會에 常任委員會가 설치되므로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”을 폐지하려는 것임.

○ 관련법규: 지방자치법(법률 제4,464호 '91. 12.31)

-第50條(委員會의 設置)

동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3,586호 '92. 2.15)

-第20條의2(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  
규정폐지규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附 則

이 예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가 改正 公布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(안)**

○ 제정이유

'91.12.31. 法律 第4,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50條(委員會設置)에 우리區議會에도 常任委員會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區議會에 접수되는 청원을 심도 있게 審査하기 위하여 기존규정을 폐지하고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”을 제정하고자 함.

○ 주요골자

- 청원의 소개 (제2조)
- 청원의 회부 (제5조)
- 청원의 심사 (제6조)
- 심사보고 (제11조)
- 청원인에 대한 통지 (제12조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(안)

第1條(目的) 이 규칙은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(이하 “議會”라 한다)에 提出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.

第2條(청원소개서등) ①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
②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議員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

第3條(불수리사항의 통지) 議長은 청원이 청원법 第5條, 第8條 및 地方自治法 第66條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第4條(이의신청) ①청원이 청원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接受하여야 한다. 이 경우議長은 그 청원을 회부할 所管常任委員會 또는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의 委員長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第5條(청원의 회부) ①議長은 청원을 接受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議員에게 인쇄·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所管常任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를 구성, 회부한다.

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, 성명, 청원의 취지,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.

③議長은 이미 설치된 委員會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.

第6條(청원의 審査) ①委員會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審査結果를議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②委員會는 第1項의 기간내에 청원의 審査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議長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